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60

2023. 12. 12.(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2월 1일

-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형근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율신설기구(과학인재국)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신설기구인 과학인재국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2항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과학인재국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도정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과학인재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